

춘천지방법원 2019. 1. 10 선고 2018가단2441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권성훈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19. 1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양구군 C 대 1,121㎡ 지상 목조 스투트지붕 단층주택 82.48㎡를 철거하고, 위 대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허경무

별지